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2020.03.01

제22조(학위자격 시험)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자격 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.

제23조(학위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) ①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 등을 발표한다.

② 학위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4조(학위자격시험 합격기준) ① 학위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급제(P) 또는 낙제(N)로 평가하고 학위자격 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